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13
----------	-----

2009년 6월 25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15일
- 다. 상정일자
-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2009년 6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

가. 제안이유

- 동 조례의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위법(「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활용업”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3조 및 안 제6조 등)
- 자동차 매매 또는 매매알선업자의 하자보증금 예치 규정 삭제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따른 조례 정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안석수)

□ 주요사안에 대한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2009. 2. 6. 전부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상의 용어중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활용업”으로 변경하고,

개정 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구체적인 보험가입 금액이 정하여짐에 따라 동 조례 제4조1항3호 및 제4조의2에 명시된 자동차매매업자의 하자보증보험 가입 및 예치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코자 하는 것임.

※ 참고 :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변경내용

<p>■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9호 (개정 2009.2.6, 시행 2010.2.7) -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개정</p> <p>■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2항 (신설 2008.3.28, 시행 2009.3.29) - 자동차매매업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p> <p>■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 (시행 2009.3.29)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보증보험 가입금액 신설 · 법인 : 2천만원 이상 · 법인이 아닌 경우 : 1천만원 이상</p>
--

-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에 따른 용어변경을 반영하고 상위법과의 중복규정을 삭제한 것
으로, 조례의 법적 안정성 제고 및 간소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 또한 기타 변경사항은 2009년 1월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띄어쓰기 및 표기방식 등을 변
경한 것으로 조례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시민이해도를 증진시킨다
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13
----------	-----

제출년월일 : 2009년 6월 1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청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에는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업자는 1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상위법령에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신설됨에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09. 4. 16. ~ 5. 6.)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대상 : 규제 심사대상 아님

(4) 이 조례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신설 또는 기존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자동차 전시용 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
2. 자동차 전시용 시설이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② 자치구청장은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기준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시설을 갖추는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고,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추는 것.
2.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6조와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차정비업의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업종별	자동차종합 정비업	소형자동차 정비업	자동차부분 정비업	원동기전문 정비업
사업장면적(㎡)	작업장·점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의 총면적	1천이상	400이상	50이상	300이상
시설 및 장비	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2. 폐인부록(1톤 이상)				○
	3. 도장작업시설(스프레이건포함)	○	○		
	4.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점검·정비 및 검사용기계· 기구	1. 제동시험기	○	○		
	2. 전조등시험기	○	○		
	3. 사이드슬립측정기	○	○		
	4. 속도계시험기	○	○		
	5.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6. 탄화수소측정기	○	○	○	○
	7. 배연측정기	○	○	○	○
시험기 및 측정기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2. 노출시험기				○
	3. 압력측정기	○	○		○
	4. 회전반경측정기			○	
	5. 휘발연서	○	○	○	○
	6. 토인측정기	○	○	○	○
	7. 램버캐스터측정기	○	○	○	
	8. 전자식엔진종합시험기				○
공작기계	1. 실린더보링머신				○
	2. 실린더호우닝머신				○
	3. 밸브시트그라인더				○
	4. 밸브시트카터				○
	5. 크랭크연마기				○

주:

-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경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자가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 펌프시험기 및 배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 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사업장은 작업장을 33㎡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휘발라인트기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램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 부분정비업자는 가스연료 사용 자동차의 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착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하여야 한다.

[별표2]

자동차체계활용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		
구분		확보 기준
대지 (작업장·야적장 및 사무실 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3천 제곱미터 이상
장비	1. 구난차(견인능력 3톤 이상)	1대 이상
	2. 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	1대 이상
	3. 중량기(제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4. 압축기(투입용적 10㎡ 이상)	압축기, 과외기, 전단기, 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5. 과외기(가압능력 372kw 이상, 생산능력 매시간당 5톤 이상)	
	6. 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처리능력 매시간당 15톤 이상)	
	7.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8. 용기내부의 잔 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 연소장치	
	9. 가스누출감지기	1대 이상
	10. 소화기	1대 이상

주)

- 환경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같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 가스연료 사용 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를 행한 후 폐차작업을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u>자동차폐차업</u> 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u>자동차해체 재활용업</u> 을 말한다.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매매업(법 제2조제7호의 자동차매매업을 말한다. 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660제곱미터이상의 자동차 전시용 시설과 사무실을 갖춘 것. 2. 자동차전시용 시설이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자동차 전시용 시설과 사무실을 갖춘 것. 2. 자동차 전시용 시설이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3.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일선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이하 "하자보증금"이라 한다)을 확보한다. ②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인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 1인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기준보다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삭제> ② 자치구청장은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명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기준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의2(하자보증금의 예치등) ① 매매업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매매업자는 매매업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에 대하여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금액을	<삭제>

충당하여야 하며, 보증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재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법 제2조제8호의 자동차정비업을 말한다. 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시설을 갖추는 것.
2.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인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고, 정비요원 총수가 16인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제1항의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시설을 갖추는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고,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정비업의 등

규정에 의한 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폐차업(법 제2조제9호의 자동차폐차업을 말한다. 이하 "폐차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추는 것.
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추는 것.
2.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